

2026년도 [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]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위한
위탁운영사업

과 업 지 시 서

2026. 8.



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

I. 사업의 개요

1. 사업명

- 「2026년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특수건강진단 실시」를 위한 위탁운영 사업

2. 사업목적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에 의거 「2026년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특수건강진단 실시」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실시하고자 함

3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

- ※ 세부일정은 별도 합의 가능

4. 사업예산 : 금 45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- ※ 본 예산은 2025년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비용을 근거로 산출함,
- ※ 본 사업은 검사항목별 단가계약으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

5. 사업기본방향

- 주된 사무소가 강원 및 경기도에 소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(특수건강진단기관)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30(특수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)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할지방 고용노동부의 장이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함
-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(등급: S, A, B, C급)에서 A(우수)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한 기관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적절한 업체
- 병원기관(종합병원 이상)과 연구기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험을 보유한 기관
- 유해 인자별 검진 항목 및 측정 방법 등 준수
- 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에 의한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 가능 기관
-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가능 기관

II. 사업내용

1. 검진대상

- 검진대상 :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전 직원
- 검진부서 : 야간작업 부서 및 유해인자 취급 부서
- 검진인원 : 약 700명 내외 (2025년 기준)

※ 검진인원 수는 기관 및 부서상황(신규입사, 부서이동, 복직 등)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검진방법 및 내용

- 검진방법 : 출장검진(1차 및 2차 재검 오전), 출장검진(매월 1회 이상, 정기특수검진은 4일 이상 연속 진행)

○ 검진항목

구 분	검진 항목	비고
야간작업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.	법적항목
야간작업 외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자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-1~3 179종	법적항목 (대상자에 한함)
그 외(방사선 종사자)	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방사선종사자(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)인 경우 해당 검진 병행 실시(항목 중복 시)	법적항목 (모든 대상자)

○ 검진일정

구 분	대상자	실시시기	비고
정기 특수검진	유해인자 취급자	9월~10월	기존 취급자 기준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및 직무스트레스평가 포함
배치전 특수검진	유해인자 취급자	매월	신규입사, 부서이동, 복직 등
배치후 특수검진			배치전 특수검진 후 4~6개월 이내

※ 정기 특수검진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으며 사전 협의 필요함

※ 20명 미만시 출장 검진 일정 협의 가능함.

3. 검진실시

-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원에 대한 검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의거하여 실시함(유해인자별 상이)
-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방사선종사자(원자력안전법 및 의료법)인 경우 해당 검진과 같이 실시함(중복항목은 대체 가능)
-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직무스트레스평가 실시
- 출장검진 시간 은 08:00 - 12:00로 하며 수검인원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
- 출장 기간내에 검진 대상자 중 추가 혈액검사가 필요하여 요청 시 채혈 대행 업무 실시 및 결과 제공 (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)
- 검진 실시를 위한 문진표 작성은 검진 실시 업체의 방식을 준용하되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함
- 검진기관은 부실·허위 검진으로 손해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
- 작업환경 측정하는 유해 물질 요인과 비교하여 자문 제공함
- 검진장소 : 본원 내 회의실
 - ※ 장소는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예상인원과 유해 물질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4. 검진결과 통보 및 결과보고서 제출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9조)

- 검진결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원에게 개별 통보 (e-mail 또는 모바일 등) 및 필요시 서면(우편) 통보
- 검진결과는 재요청 시 즉시 재발급 할 수 있도록 함
-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송부
 - 특수건강진단: 별지 제85호서식의 (특수, 배치전, 수시, 임시) 건강진단 결과표 및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
 -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
- 검진결과 즉시 통보 요청 건
 - 검진결과 감염 전파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(예: 활동성 결핵,폐암, 간 질환 등)이 발견된 자 또는 개인건강관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자는 즉시(늦어도 7일 이내) 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그 즉시 해당 직원에게 개별 통보 및 조치해야 함

○ 검진결과보고서 제출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 관리 소견서,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표는 책자 제공 및 파일(엑셀 및 PDF)로 제공
- 흉부방사선 판독소견서 제공
-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및 직무스트레스 평가결과 제공(개인별 결과표 포함)
- 방사선(관계/작업)종사자 건강진단서 제공
-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요청 시 제공
- 개인 검진결과 개별 통보 방법은 모바일로 발송 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함
- 재검자 발생시 개인 검진 결과 통보 기간 내 보건관리자에게 통보
- 2차 재검 후 7일 이내 최종 결과에 대해 개인 및 보건관리자에게 제공

5. 검진 결과상담 및 추후관리

- 검진결과 질병 요관찰자,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검진 사후관리 소견,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, 개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
- 필요(요청)시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에 응해야 함

6.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

- 과업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
- 검진진행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
-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
-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발생 시 본 기관과 해당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
- 과업 수행 중 문제 발생시 반드시 보건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
- 보건관리자와 검진기관은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사항 점검 및 업무 협의 조정 가능함
- 검진의 불완전 시행으로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검진기관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검진기관에게 있음
- 검진 실시로 취득한 모든 자료(결과)는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계약종료 후에

- 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비밀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검진 기관이 책임져야 함
-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검진기관에 있음

Ⅲ. 기타사항

1. 보안유지

- 수급자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직원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서 취득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기밀 사항 및 검진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
- 본 과업과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검진기관의 책임으로 함

2. 유지·관리 대가 및 지급방법

- 대가는 검진 종료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(청구내역서 및 계산서,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 등)에 의한 산정내역에 의하여 청구함
- 건강검진의 입·퇴사자 및 부서전출로 인한 대상인원의 변동될 시 수검한 인원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2차 검진(재검진)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협의 후 정산함
- 계약 전 견적가(단가)를 따르며 그 외에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청구 하지 않도록 함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(건강진단비용)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

3. 계약해지

- 검진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, 검진기관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에는 검진기관은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함
 - －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
 - －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업무

- 수행 및 기밀사항 누설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
 - － 검진기관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

- 검진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 업체로 부적당하다고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반한 검진기관이 수반함

4. 기타

-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 검진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,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해석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,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함
-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검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제공하는 검진장소 등은 원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, 이를 개조 및 보수 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행하며,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,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함